

〈별표71〉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

약관에 규정하는 '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'은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94호, 2023.1.1. 시행)' 제4조 별표3(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)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분류항목	특정기호
〈별표71-1〉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'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〈별표71-2〉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'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〈별표71-3〉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'에 해당하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, 〈별표71-1〉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'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〈별표71-2〉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'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	V192

주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.